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제20181234 호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8.11.2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0.07

simmya@naver.com

심야스테이크

정보공개서

심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심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9번길 28-8, 1층(조원동)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 번호	(비공개)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 번호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본부 <i>(비공개)</i>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 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심야스테이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9번길 28-8, 1층(조원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		대표팩스번호	
심야	개인사업자	2018.08.16.	윤진	Sit (A)	공개)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	록번호	12	2-42-3317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경기 수원시 장안-	구 조원로89번길 28-8	3, 1층(조원동)			
사용인	윤 진	심야스테이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원)	(임원)		윤진	(धास्या)	-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9번길 28-8, 1층(조원동)					
사용인	박원재	재 심야스테이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원)			윤진	(धारुगा)	-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경기 수원시 장안-	구 조원로89번길 28-8	3, 1층(조원동)			
사용인	도상엽	 심야스테이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원)	100		윤진	(धस्य)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심야스테이크]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칭	심야스테이크	심야시간 스테이크와 파스타 주류의 만남
상호	심야스테이크 OO 점	
상표 (서비스표)	장야 스테이크	상품분류 43호 등록번호 : 제401435104호 (2019.01.09.)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 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37,752	250	37,502	311,026	8,584	8,584
2022년	31,516	2,598	28,918	441,381	22,927	22,767
2021년	21,916	6,850	15,066	454,115	30,335	30,335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기간	직위	담당업무
	윤 진	대표	2018.03.14~현재	심야 스테이크 대표	브랜드 운영 총괄
│ 가맹사업 │ 관련임원	박원재	임원	2018.05.13~현재	심야 스테이크 임원	3호점 점포 운영
	도상엽	임원	2018.03.14~현재	심야 스테이크 임원	2호점 점포 운영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위	직원수	
2023.12.31	상근	비상근	
	1	-	_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심야스테이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한적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서비스표)	권리내용	등록번호	등록일자	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及6 二列 O 五	가맹점 운영	제401435104호	2019.01.09.	윤진	2029.01.09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의 [심야스테이크] 가맹사업 현황

1. [심야스테이크]의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7.07.10.

2. [심야스테이크]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017. 07. 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42번길 53
			~2018.08.16 (연무동)		
NOF.	시아스테이크	요 윤 진	2018.08.16.~	경기도 취심시 파티면 비드 74500	
심야 	심야스테이크		2024.03.3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1582	
			2024.04.01.~현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9번길 28-8, 1층(조원동)	

3. [심야스테이크] 업종

영업표지	업	종		
المالية المالية	대분류	소분류		
심야스테이크	기타 외식	스테이크, 파스타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심야스테이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0	10	-	7	7	-	6	6	-
서울	-	-	-	-	-	-	-	-	-
부산	-	-	-	1	-	-	-	-	-
대구	-	-	-	1	-	-	-	-	-
인천	-	-	-	1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ı	-	-	-	-	-
세종	-	-	-	-	-	-	-	-	-
울산	-	-	-			-	·		
경기	10	10	-	7	7	-	6	6	
강원	-	-	-	1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심야스테이크]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7	2	2	1	-	6
2022	10	1	-	4	-	7
2021	8	4	1	1	-	10

6. [심야스테이크]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심야스테이크]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심야스테이크]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말 가맹점수							
지역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6	208,031	10,237	315,694	24,992	88,329	3,527	
서울								
부산								
대구						_	_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6	208,031	10,237	315,694	24,992	88,329	3,52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상기 매출액은 각 가맹점의 POS를 기초로 하여 연평균 매출 추정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당사는 영업개시 6개월 미만의 가맹점의 매출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심야스테이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심야스테이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6	839

9. 가맹지역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는 [심야스테이크]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직전 연도에 [심야스테이크]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TE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2023년	-	-	
광고	-	2023년	-	-	-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영화동지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8	031-243-0090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위 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합니다. 예치방법은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의 이름을 찾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상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심야스테이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아래와 같은 비용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냉난방 설치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심야스테이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 중 예치여부는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당사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당사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지정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3,750			소요된 비용은 불가	예치가맹금
가맹비	8,250	계약 체결과 . 동시 지급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가입비(영업표지사용 및 가맹점 운영권 부여) 운영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
교육비	5,500		교육시작 전 계약해지	교육시작	점포 운영 교육

2)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 ,	1. C C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게야 체격자	로열티, 광고판촉비, 교육비,	계약종료 시 잔존
보증금	2,000	계약 체결과 동시지급	물품보증금 등 계약상 채무 및	채무공제 후 반환.
			손해배상금의 발생	이자 미발생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단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합계	15,750
최초가맹금	13,750
보증금	2,000

[&]quot;예치가맹금"이라 함은 가맹비, 교육비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 기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을 말합니다.

4)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합계]	-	35,750	3,575	계약체결 시	계약 취소	33㎡(10평) 기준
인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19,800	1,980	계약체결 시 또는 견적 시	공사 전 계약 취소	별도 계약시 개별약정 우선
간판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4,400	440	계약체결 시 또는 견적 시	공사 전 계약 취소	별도 계약시 개별약정 우선
장비및집기 (주방설비)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7,700	770	계약체결 시 또는 견적 시	공사 전 계약 취소	별도 계약시 개별약정 우선
초도물품	가맹본부 또는	2,200	220	계약체결 시 또는 견적 시	설치 전 계약 취소	별도 계약시 개별약정 우선
POS 등	급력업체 협력업체	1,650	165	물품공급 전	상품 공급 전 계약	별도 계약시 개별약정 우선

		+1 4	
		쉬소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건물형태, 현 장상황, 품목, 수량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외장공사 및 내부옵션공사, 별도공사, 각종 인허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 귀하가 당사의 인테리어 및 장비에 관한 매뉴얼을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하지 않으면, 당사의 지정업체를 통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가 아닌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공사지도를 따라야 하며 디자인노하우 제공 또는 관리감독비로 3.3㎡당 33만원(부가세 포함)을 착공전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다음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 가. 별도공사 : 카운터 설치, 철거, 테라스, 외부닥트, 냉난방, 외부샷시, 전기승합, 정화조, 화장실, 점포외부 공사, 간판 벽면(간판공사) 및 기둥 공사, 소방, 가스시설, 음향기기 등
 - 나. 기타공사: 방수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기본 방수 외 추가 진행 시), 조경공사
 - 다. 임대보증금, 권리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타 인허가 비용
- ※ 점포의 규모가 같은 경우라도 점포의 형태, 노후정도, 구조 등에 따라 상기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1) 당사는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개설 전 신규교육 이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기정검사합사	게 할 선 선규포육 이구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ㆍ 공급업체

[심야스테이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당사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분담기준은 [V-9] 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사	330 천원	매월 5일	반환 안됨	-	월초 선불
POS	당사	별도계약	별도계약	-	-	협력업체
정기광고비	미정	-	-	-	-	사전고지
물품대금	당사	발주시 선불	반환 안됨	반환 안됨	-	-
광고분담금	당사	협의하여 통지 (V-9-참조)	광고 실시전	반환 안됨	-	-
교육훈련비	당사	교육실시전 통지	교육 실시전	교육 실시	교육 실시	-

점포 환경 개선 비용	당사 또는 협력업체	VII-1 참조	교체시	-	-	교체, 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당사 또는 협력업체)	협의	변경사유 발생시 별도로 기준정함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지연이자	당사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채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합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필요시	문의: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필요시	(비공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변경된 정책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①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사업 운영을 노력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심야스테이크]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550만원, VAT 포함) 및 계약이행보증금(200만원, VAT 없음)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IV-7]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의 가맹계약이 종료(기간만료, 해지, 갱신거절 등)된 경우에는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 상표(온라인 포함), 로고, 디자인, 간판,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사용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 ② 또한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지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만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를 표시하는 시설물 철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종료 이후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심야스테이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 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별지에 기재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심야스테이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심야스테이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심야스테이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제품 및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3)의 메뉴명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표에 명기된 사항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명	제한내용	위반시 책임
영업지역 외의 소비자	'심야스테이크'의 모든 상품	유통(서비스) 금지	1회 위반: 구두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경쟁업체	'심야스테이크'의 모든 상품 및 원부자재	유통(서비스) 금지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 표에 명시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 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권장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한번 협의된 가격은 당사와의 별도 합의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메뉴명	권장 가격 (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스테이크200g	12,900		
스테이크400g	25,000		
스테이크600g	37,000		
찹스테이크200g	16,900		
찹스테이크400g	32,000		
스테이크샐러드200g	15,900		
스테이크샐러드400g	30,800		
스테이크덮밥	15,900	판매가격 변경시	
버섯크림파스타	9,900	변경가격을	
불고기로제파스타	9,900	온·오프라인	2024.3월
메콤해물로제파스타	10,900	통지, 시스템	기준
봉골레파스타	11,900	· 공지(홈페이지 , · 프로그램 등) 를	
새우오일파스타	10,900	통해 공지	
짬뽕해물파스타	13,900		
바지락술찜	18,000		
감바스	18,000		
우뎅탕	18,000		
순두부얼큰짬뽕탕	24,900		
명란감자	8,000		
국물떡볶이	8,000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 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맥앤치즈	8,000
버터오다리구이	12,000
오징어주댕이	12,000
명란밥	3,000
흰밥	2,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주 메뉴로	시아스테이크	#1다 어 0
판매하는 중저가업종	심야스테이크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로 설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별지로
(점포간 이격거리 1km 기준)	
(점포 중심 원형 상권, 특수상권은 제외)	표시하는 경우 별지 우선

^{*} 특수상권: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쇼핑센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

다만, 6차선 이상 도로, 하천, 구릉 등과 부동산 공법상 지역, 지구개발로 인한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나이로 인한 새로운 쇼핑가 및 집객시설 등 상권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심야스테이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관계에 놓일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u>.</u>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심야스테이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 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계약만료일:
순 서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 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 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0조 제1항
○ [심야스테이크]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 조무
	꾸군

○ 가맹점사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여 가맹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9조 제1항의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원 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11조 [동종업종 영업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감독 및 시정권]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물품 등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제2항 [하자 있는 물품 등의 판매책임]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교육 및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 [점포의 설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 [설비, 비품의 설치 및 유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 가맹점사업자가 제30조 [설비 및 기기의 대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 [영업시간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의 2 [영업의 중단 및 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33조 제1항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기타 합의 사항 및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하려할 때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TII 25 X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5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51조
○ 가맹사업의 통일화 및 활성화를 위한 영업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세기조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발생

단,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종전 계약 내용을 준수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1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31) 242-9282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희망할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지급
대리 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승인요청→ 당사자 확인 후 승인	
업무 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스테이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종료 후 6개월 이내에도 같은 장소에서 [심야스테이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식사류, 주류를 제공하면서 쇠고기를 철판에 굽는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 파스타 제공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승인여부 통지 → 완료	문의: (031) 242-928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심야스테이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7시 ~ 익일 02시까지	주 1일 휴무 권장	휴업할 때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 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근무 권장	교육받은 자에 한함	10평(33㎡)기준

4) 당사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팀
위생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근무자) 확인 및 서명 →완료	필요시	
각종설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기계장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근무자) 확인 및 서명 →완료	필요시	71 04 11 04 51
원부자재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원부자재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가맹사업팀
서비스 및 레시피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및 레시피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심야스테이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 .	9T 94	당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길시		
	브랜드광고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분담액 명세서를 통지 → 가맹점 광고 불참 시 사유를 당사에 서면 제 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광고	브랜드광고+ 가맹점모집광고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득함 → 통지 후 7일까지 가맹점분담액 입금 → 광고 시작 → 가맹점사업자 사용내역 요청 시 당사는 제시함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 음	-		
판촉	전국판촉행사 (할인, 증정 등)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분담액 명세서를 통지 → 가맹점 판촉행 사 불참시 사유를 당사에 서면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함 → 통지 후 7일까지 가맹점분담액 입금 → 판촉행사 시작 → 가맹 점사업자 사용내역 요청시 당사 는 제시함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아 경우 당사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겠습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잔여계약 개월 수에 금일백만원(₩1,000,000)을 곱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1조(영업비밀 및 동종업종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로 당사에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자점매입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금일천만원(₩10,000,000) 중 큰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자점매입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금일천만원(₩10,000,000)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종료 후에도 가맹계약서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벌로 당사에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이십만원(₩2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가맹계약서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합계		47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상담 →담당자 배정	D-47	
가맹희망자 미팅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점포 有 → 출점가능성 조사 점포 無 → 가능지역 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가맹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 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설치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T시한 문제가 걸음하여 걸기피어가 라또한당개인을 하는 승구에는 마음문답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당사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인력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당사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당사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당사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필요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심야스테이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교육	영업 중 인지해야 할 사항 가맹점 경영 교육, 당사 규정 및 방향	집단강의 또는 점포실습	개점 전	신규교육
정기교육	필요시 계획하여 실시	사전 공지	사전공지	정기적
특별교육	필요시 계획하여 실시	사전 공지	사전공지	비정기적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심야스테이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최초교육	총 3일 (2박 3일 합숙 포함)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교육	사전 공지	사전 공지	정기적
특별교육	사전 공지	사전 공지	비정기적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는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맹계약서 제26조에 따라 영업개시 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신규 및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계약서 제22조 물품공급의 중단, 가맹계약서 제34조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서 제39조 위약금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ㄹ 저	사어여드	마	기즈	직영점의	며치	미	스재지
Ι.	마도 엔	지입인도	=	기판	직성점의	77.00	*	고제시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원부자재 품목

별지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하한

별지 3.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별지 4.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별지 5.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지 6.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지 1] 원부자재 품목

※아래 품목 및 가격은 당사의 경영방침 및 물가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비 및 집기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초도물품 및 거래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3]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서 (자필작성)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u></u>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심야 대표		<u>:</u>	(인) 또는	- 서명	
수령자		: (인) 또			(인) 또는	- 서명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심야 대표 (인) 또는 서명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4]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 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No.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받은 일시: <u>년 월 일</u>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 령 자 : (인) 또는 서명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No.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받은 일시: _ 가맹본부 : 수 령 자 :			년		<u>일</u>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별지 5] 가맹금 예치 신청서

가맹금 예치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너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2	귀하		

[별지 6]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